

● 환경부공고 제2021-249호

「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(를)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02일

환경부장관

「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사유

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」,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,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,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,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,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영업 변경허가·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(안 제3조)
- 나. 시범생산의 정의,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, 방법을 규정 (안 제4조)
- 다.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, 내용, 방법을 규정 (안 제5조)
- 라.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(안 제6조)
- 마.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(안 제7조)
- 바.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안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

- 다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안전과

- 전자우편 : daz14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(전화 044-201-6832, 전자우편 daz14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